

FTA 동향

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 10월 1일 발효



5년여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한-중미 FTA가 국회 비준절차를 마치고 10월 1일 발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중미 FTA는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온두라스, 니카라과 2개 국가와는 한-중미 FTA 발효 조항에 따라 국회 의결 후 상대 국가에 통보한 날(8월 9일) 이후 2번째 달 1일인 10월 1일 FTA가 발효되었다. 이후 다른 국가들은 순차적으로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로, 한-중미 FTA 발효 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총 57개국 16개의 FTA로 늘어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게 된다.

산업부는 최근 美·中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중미 FTA가 발효되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 시장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중미 FTA를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對美 수출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 기업이 중미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이로써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외에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한편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 새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기로 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미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누적 기준 실질 GDP는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 9,000만 달러 개선되며, 일자리는 2,534개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장,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도체 분야 현장 방문



김영문 관세청장은 8월 13일(화) 오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화학제품을 수입·제조 하는 중견기업인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충남 천안)에 이어 같은날 오후 반도체 제조 보세 공장인 (주)삼성전자(경기 화성)를 방문 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원책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 8.13(화)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10:00), (주)삼성전자(14:00)
- **참석** : (ENF) 박기수 이사 등 임직원, (삼성전자) 허길영 전무 등 임직원
- **주요내용** : 관세행정 지원방안 설명,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김 청장은 이날 방문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 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 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Whitelist)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장치기간 연장(2~3月 → 필요기간),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등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동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 '특별 통관지원팀' 편성,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 국산소재 연구·개발용 학술연구용품, 기계류·시설재 등 수출규제 관련 감면요건 사전심사

아울러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의 방문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이밖에도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 FTA 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 통관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수입하기 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

관세청은 또한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지원 방법 및 연락처 하단 참고]

【참고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운영방안】

■ **지원대상**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 **지원절차**

- ①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접수(방문, 우편, e-mail 등)
- ②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 ③ 수입원자재 보세구역 장기간 비축 지원, 신속 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
- ④ 납기연장·분할납부, 감면사전 심사, FTA 컨설팅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부서(수입·심사부서)에 신청 후 시행

■ **구비서류**

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 (예) 일본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 품목의 기존 거래 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제3국 신규 거래선과의 계약서 등

■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3	053-230-5599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2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031-8054-7042	031-8054-7046	fta016@korea.kr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1일(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간 양국은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이내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되었다.

* 1차(2016.6월), 2차(2016.12월), 회기간(2017.2월), 3차(2017.3월), 4차(2017.4월), 5차(2017.5월), 6차(2018.3월)

양측은 이번 타결 선언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양국 연구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금번 한-이스라엘 FTA는 중동지역 핵심 시장인 이스라엘 수출 확대, 우리 기업의 시장 다변화,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영 FTA 정식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2일(목)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하였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한-영 FTA 체결이 가지는 의의는 첫째로,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No-Deal)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한-영 양자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바, 이번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김영문 관세청장은 8월 27일 (화) 서울(임피리얼팰리스서울 호텔)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전환 및 개도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이 최근 통관 환경 변화와 수출입 유의사항 등 생생한 통관 정보와 이슈를 소개하였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장벽, 중국의 세관개혁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등을 중점 설명하였다.

아울러 관세관 주재국의 수출입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관세관과의 1:1 상담 데스크를 마련하여 국가별 ‘원산지결정 기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수출 통관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하였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8월 27일, 임페리얼팰리스서울 호텔에서 열린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관세관을 초청하여 해외통관 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에 이어 부산[8.29(목), 부산 롯데호텔]에서 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원산지 자료교환 및 관세 전문가 파견 확대, 해외 관세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한-아세안 FTA’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개선 안내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되,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과도 기간을 두고 2020년 1월 1일부터 완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절차가 완료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으로 총 5개국이며, 미완료된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으로 총 6개국이다.

관세청은 이처럼 과도기간 중 한-아세안 FTA 당사국별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운영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수출당사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 기재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밝혔다.

(수입국이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인 경우)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단,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에서 HS 2017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수입국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인 경우)

현행과 같이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HS 2012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관세청은 앞으로 미완료된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